

| 의제별위원회_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소개 |

ILO 기본협약 비준 및 노동법 개선·노동기본권 다룬다

김미영 전문위원

발족개요

- (의제) ILO기본협약 비준과 노조법 쟁점, 노사자치의 노동법제 개선, 미조직 취약근로자 포함 노동기본권 확대, 그 외에 위원회가 결의한 기타 의제
 - *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
- (구성) 위원장 1명, 노동계 2명, 경영계 2명, 정부 1명, 공익위원 7명 등 총 13명
 - * 노동계 추천 2, 경영계 추천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추천 3(위원장과 협의)

구분	위원 명단
위원장(1)	박수근(한양대 법전문 교수)
노동계(2)	유정엽(한국노총 정책실장), 민주노총(미정)
경영계(2)	김영원(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박재근(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
정부(1)	김민석(고용노동부 노사관계정책관)
공익(7)	김인재(인하대 법전문 교수), 이승욱(이화여대 법전문 교수), 김성진(전북대 법전문 교수), 김희성(강원대 법전문 교수), 권혁(부산대 법전문 교수), 박은정(인제대 법전문 교수), 조용만(건국대 법전문 교수)
전문위원	김미영(경제사회노동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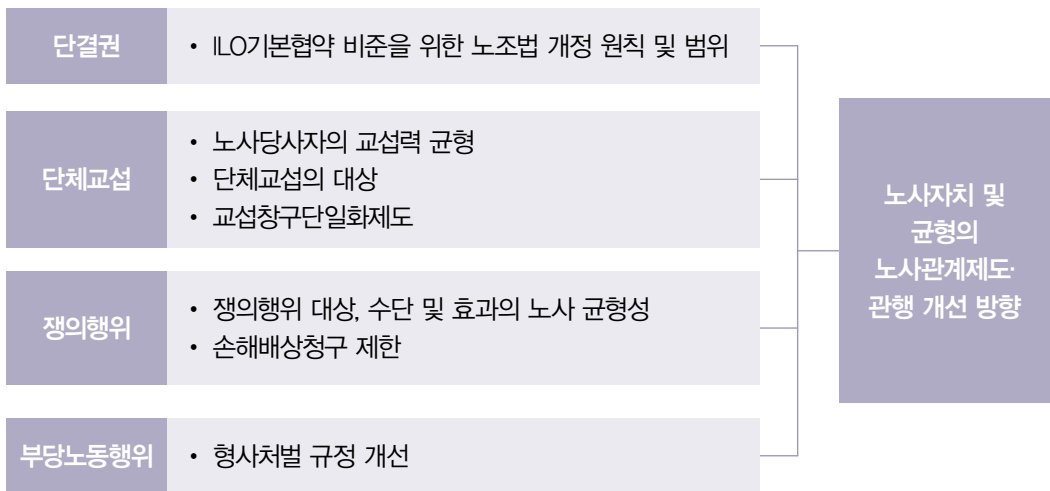
- (운영기간) 18.7.20~19.7.19
* 1년. 필요시 1년 이내 연장

추진 경과

- 1차 발족(7.20) 이후 전체회의(12회), 간사단회의(4회), 공익위원회의(4회) 개최.
- 제12차 논의 1단계 마무리(11.17); 'ILO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회의안 기자브리핑 (11.20); 공익위원 회의안 기자설명회(12.5)

향후 계획

- 전체적으로 논의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 ① ILO기본협약 비준 관련 단결권; ②균형과 자치의 단체교섭관계; ③ 노사자치 원칙의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제도
- ILO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쟁점을 다룬 단결권 논의를 1단계로 진행하여 공익위원 전원합의
- 다음 단계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영역 중에서 구체적 의제를 선정하여 진행 예정.



- ②, ③영역의 논의까지 마무리 하면, ①, ②, ③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노, 사, 정의 포괄적 합의 또는 공익위원 합의 시도 → 노조법 개정의 원칙을 국회에 제시